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21

발의연월일: 2024. 8. 19.

발 의 자:김재섭·엄태영·백종헌

권영진 · 조은희 · 박정하

구자근 · 김정재 · 정성국

윤영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의 도시·건축적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 시행되었음. 시행 이후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중 4곳은 지구지정 2년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본 사업은 3년의 한시법으로 도입되었으며, 투기세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21.6.30일 이후에 토지등소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공공 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주택등의 우선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후보지 선정 후에는 거래가 제한적이며, 특 히 '21.6.30일 이후에 발표된 후보지 21곳은 후보지 발표전에 거래를 한 경우에도 현금청산을 받게되는 사례도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 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도심 내 주거지인 쪽방 밀집지역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 거 여건 개선을 위해 '20. 1월부터 영등포 등 3개 지역에 대한 공공주 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LH의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으로 LH의 신뢰도 저하로 주민들이 시공사 추천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원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현물보상 제도의 유효기간이 2024년 9월 20일에 도래하게 됨.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도 원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현물보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같이 주민들이 시공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시공사 추천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현물보상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 나.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추진 시 주민들이 시공사를 추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제27조의4제4항).
- 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정권자는 복합지구의 지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역을 복합지구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7).
- 라. 토지등의 보상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대상자를 '21. 6. 29. 이전 토지 및 주택 취득자에서 후보지 선정 이후의 토지 및 주택 취득자로 확대하며, 무주택자 등이 취득하는 경우 후보지 선정이후 취득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함(안 제40조의10).
- 마. 도심 복합사업으로 수입이 중단되는 다가구주택 및 상가 등의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14제1항제4호 신설).
- 바. 제40조의10에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의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준용규정에서 삭제함(안 제40조의17).
- 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로 정하고 있는 부칙조항을 개정하여 법 시행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하고, '21. 6. 30. 이전에 토지등의 취

득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 등에게만 적용하는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 칙 제2조 및 제4조 삭제).

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승인, 시공사 선정 등에 관한 개정규정 과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현물보상에 관한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을 2024년 9월 20일에서 2025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하고, 토지보상에 관한 적용례는 삭제함(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 및 제4조, 제8조 삭제).

법률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현물보상"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한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또는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토지등소유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로 보상하는 것을말한다.

제27조의4제1항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토지등소유자"로,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10에서 같다)로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를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40조의10제3항·제4항 및 제7항"을 "제40조의10제6항·제8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중 ""지구조성사업"으로 본다"를 ""지구조성사업"으로, "후보지 선정일"은 "해당 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지구조성사업의 주민의견수렴 등에 대하여는 제40조의12부터 제40조의1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복합사업"은 "지구조성사업"으로 본다.

제40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2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 항(종전의 제2항)제2호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 유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합지구"를 "제2항에 따 라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복합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복합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신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복합사업에 필요한 자료 의 제공, 서류의 발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 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② 지정권자는 복합지구의 지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복합지구 후보지(이하 "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후보지를 변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복합사업을 추진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후보지로 선정하려면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후보지에 대하여 그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2.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후보지 선정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권자에게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의10제8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 ④ 제40조의7제2항에 따른 후보지 선정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법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후보지 선정일(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후보지로 선정하여 공고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후보지 선정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제40조의10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를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정일(후보지 변경을 원인으로 후보지에 속하게 되는 지역은 후보지를 변경하여 공고하는 날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복합지구 내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현물보상"을 "현물보상"으로 하고,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것으로 본다.
- 1. 후보지 선정일 전에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복합지구 지정을 고시한 때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여 계속 소유한 자

-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후보지 선정일 이전에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복합지구 지정을 고시한 때까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계속 소유한 자
- 3.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제40조의10제6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한다)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현물보상등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등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를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현물보상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 "현물보상등의"를 "현물보상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1항"으로, "현물보상등"을 "현물보상"으로 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현물보상으 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으로 보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 물 또는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 1.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 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보상금 총액이 높은 자에게 우선하여 건축물로 보상하며, 그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 2.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복합사업으로 조성되는 같은 용도의 토지로 보상한다.
- 3. 보상하는 토지등의 가격 산정 기준금액: 건축물의 경우 제40조의 11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하고, 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다.
- 4. 권리산정 기준: 공공주택사업자가 현물보상을 하는 권리의 산정은 현물보상을 위한 협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물보상을 하는 토지등이 후보지 선정일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가.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 나. 동일인 소유(공유지분 소유를 포함한다)의 토지 및 주택의 지 분을 분할하거나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 다.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어 토지등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마. 동일인 소유(공유지분 소유를 포함한다)의 다수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각각 분리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바.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등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5. 보상기준 등의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현물보상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현물보상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 ①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 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정일 이후 해당 복합지구의 토지 및 건축물 을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가. 토지등소유자가 제6항제1호 후단에 따라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자(해당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무주택자로 본다) 로서 후보지 선정일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전에 토 지등을 취득한 경우
- 나. 해당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하여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후보지 선정일 이후에 발생한 최초의 소유권 변동 또는 보존 등기 취득인 경우. 다만, 거래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승계하는 특약을 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부터 확인받는 경우에 한한다.
-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 조제5호의 "관계인"에는 제7항에 따라 현물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취득한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40조의11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를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로한다.

제40조의14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 소유자, 다세대주택 소유자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얻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 지원

제40조의17제1항 전단 중 "제6조제3항·제4항"을 "제6조제3항·제4항, 제7조제1항·제5항"으로,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4항·제5항"을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제6조제3항·제4항 및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3년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4 년 9월 20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4조 중 "202 4년 9월 20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부칙 제8조를 삭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현물보상에 관한 유효기간)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 적용 시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복합지구로 지정되거나 예정지구로 지정된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제40조의10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10제 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 권 변동부터 적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발생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변동부터 적용한다.
- 제5조(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 으로 후보지로 알린 복합지구의 경우 제40조의10제5항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이전에 토지등을 취득한 토지등소유자는 후보지 선정일 이전에 토지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② 제40조의10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복합지구 또는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제40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 1.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이전에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지정 고시일 전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경우
-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이전에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지구지 정 고시일 전까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현물보상"이란 제4조에 따
	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협의에 응한 제27조의4제1
	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또는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
	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의4(쪽방 밀집지역을 포함	제27조의4(쪽방 밀집지역을 포함
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	등에 대한 특례) ①
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여 지구조성	
사업을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지구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 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주택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 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10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현물보상에 관하여는 <u>제40조</u> 의10제3항·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지구" 는 "공공주택지구"로, "복합사 업"은 <u>"지구조성사업"으로</u> 본 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의11을 준

토지등소유자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 ② ----- 제40조 의10제6항・제8항 및 제10항------ "지구조성사업"으로, "후보 지 선정일"은 "해당 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역산하 여 1년이 되는 날"로 본다.
- ③ (현행과 같음)
- ④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지구조성사업의 주민의견수렴 등에 대하여는 제40조의12부터 제40조의14까지를 준용한다. 이

용한다.

- 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 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 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지정 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복합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1.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여 출자・설립한 법인이 <u>제</u> 2항에 따른 제안을 하는 경우 지정권자: 시·도지사
 - 2. 제1호 이외의 공공주택사업 자가 <u>제2항</u>에 따른 제안을 하 는 경우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신 설>

경우 "목압시구"는 "공공주택시
구"로, "복합사업"은 "지구조성
사업"으로 본다.
세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
구의 지정 등) ①
1
<u>利</u> 4
<u>ठ</u> ो
2
<u>제4항</u>
② 지정권자는 복합지구의 지정
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에 대하여 복합지구 후보지(이

<신 설>

하 "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하 거나 선정된 후보지를 변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지사가 후보지로 선정하려면 국 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야 한다.

-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후보지에 대하여 그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 합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 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 히 곤란한 경우
- 2.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후보지 선정의 철회를요청하는 경우(제4항에 따라

②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자는 지정권자에게 <u>복합지구</u>의 지정·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 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를 제안 할 수 있다.

- 1. (생략)
- 2. 복합지구 지정 후 3년이 경과 한 구역으로서 복합지구에 위 치한 <u>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u> 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공공 주택사업자에게 해제를 요청 하는 경우(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복합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u>할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 발급하는 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권자에
게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는 제외한다)
<u>4</u>
<u>제2항에 따</u>
라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복
합지구
·.
1. (현행과 같음)
2
<u>토지등소유자</u>
<u>⑤</u>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복합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서류의 발
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u>요청</u>

류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변경·해제를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의 지정·변경·해제 및 그 제안에 대하여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 공사 등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한다.

⑤ 지정권자가 복합지구를 지정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u>제6항</u>에서 같 다)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이 경우 지정 공고한 지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

,
<u>⑥</u>
<u>제4항</u> -
<u>⑦</u>
<u>제8항</u>

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⑤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변경 제안을 반려하여야 한다.
 1. ~ 3. (생략)
- ① 제6항에 따라 복합지구 지정 제안이 반려된 경우 예정지구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며 지 정권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 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의 유형 및지정기준,제안의 방법,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복합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① 저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u>8</u>
제4항
1. ~ 3. (현행과 같음)
<u> </u>
<u>⑩</u> <u>제9항</u>
세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
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40조의7제2항에 따른 후보
지 선정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제70조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법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에도 불구하고 후보지 선정일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권 자가 후보지로 선정하여 공고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 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후보 지 선정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 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 정일(후보지 변경을 원인으로 후보지에 속하게 되는 지역은 후보지를 변경하여 공고하는 날 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복합지구 내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현물 보상-----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 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으로 보 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 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 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1.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양도한 자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 족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대 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보상금 총액이 높은 자에게 우선하여 건축물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 여 공고한다.

2. 보상하는 건축물 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제40조의11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한다.

3. 보상기준 등의 공고: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u>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는</u> <u>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토지등</u> 을 계속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후보지 선정일 전에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복합지구 지정을 고시한때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여 계속 소유한 자

-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후보 지 선정일 이전에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복합지구 지정을 고시한 때까 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 아 계속 소유한 자
- 3.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소 유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
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건축물
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
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 및 노유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토지등의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해당 복합사업으로조성되는 같은용도의 토지로보상할 수 있다.

속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토 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⑥ 공공주택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하고자 할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에도 공공주택으로 보며, 현물 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40조 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1.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양도한 자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 족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대 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보상금 총액이 높은 자에게 우선하여

건축물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 여 공고한다.

- 2.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및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복합사업으로 조성되는 같은 용도의 토지로 보상한다.
- 3. 보상하는 토지등의 가격 산 정 기준금액: 건축물의 경우 제40조의11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하고, 토지의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다.
- 4. 권리산정 기준: 공공주택사업 자가 현물보상을 하는 권리의 산정은 현물보상을 위한 협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물보상을 하는 토지등이 후보지 선정일 이후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u>가.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u> <u>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u>

나. 동일인 소유(공유지분 소 유를 포함한다)의 토지 및 주택의 지분을 분할하거나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다.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 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되어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 가 증가하는 경우

마. 동일인 소유(공유지분 소유를 포함한다)의 다수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각각 분리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바.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신 설>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등을 건축하 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5. 보상기준 등의 공고: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 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현물보상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현물보상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정일이후 해당 복합지구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만 <u>족하는 경우</u>
 - 가. 토지등소유자가 제6항제1 호 후단에 따라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자(해당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

한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무주택자 보다)로서 후보지 선정일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전에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

- 나. 해당 토지 및 건축물과 관 런하여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수가 증가하 지 아니하는 경우
- 다. 후보지 선정일 이후에 발생한 최초의 소유권 변동 또는 보존등기 취득인 경우. 다만, 거래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승계하는 특약을 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확인받는 경우에 한한다.
-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 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이하 "현 물보상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현물보상등을 약 정한 날부터 현물보상등으로 공 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 매(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 되. 상속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현물보상등 의 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 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 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 분의 1로 한다.

<u>⑥</u>·<u>⑦</u> (생 략)

<신 설>

⑧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
리는 현물보상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u>날</u>
<u>현물보상의</u>
,
<u>⑨</u> · <u>⑩</u>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관계인"에는 제7
항에 따라 현물보상의 대상이

⑧ 제3항부터 <u>제7항</u>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 및 토지의 공급기준 등 <u>현물보상등</u>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11(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① 제40조의10에 따라 현 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7조, 제57조의2, 제64조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 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지상권・
	<u>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u>
	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
	권 외의 권리를 취득한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
	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취득
	한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u>⑫</u> <u>제11항</u>
	<u>현물보상</u>
저	40조의11(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② (생략)

제40조의14(복합사업의 토지등소 제40조의14(복합사업의 토지등소 유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공공 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의 효율 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② (생략)

제40조의17(도심 공공주택 복합사 업에서의 준용) ① 복합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 제4항, 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 조까지,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 까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u>제27조제4항·제5항</u>, 제27조의

있	し	F	

- ② (현행과 같음)
- 유자 등에 대한 지원) ① -----

- 1. ~ 3. (현행과 같음)
- 4. 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 소 유자, 다세대주택 소유자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복 합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얻 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등 비 용의 일부 지원
-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의17(도심 공공주택 복합사 업에서의 준용) ① ---------- 제6조제3항·제4항, 제 7조제1항·제5항-----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2,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	
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	
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	
지구"는 "복합지구"로, "지구계	
획" 및 "사업계획"은 "복합사업	
계획"으로, "지구조성사업"은	
"복합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	
관"은 "지정권자"(제8조제5항	
및 제29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로 각각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②
지정하는 복합지구에 대하여 <u>제</u>	
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는	<u>6조제3</u>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u> छ</u> ी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
일부개정법률 부칙	Ç
에2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제2조(도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2조제	관한 -
2호의2, 같은 조 제3호마목, 제4	
조제1항제6호, 제33조, 제34조	
제1항, 제5장의3(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3까지) 및 제57조의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일부터 <u>3년간</u> 효력을 가진다.	

②
<u></u>
<u>6조제3항·제4항 및 제7조제1</u>
<u>항</u>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12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4조(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 <삭 제> 보상에 관한 특례) ① 제40조의 10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을 국회가 의결한 날의 다음 날부 터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 득하기 위한 등기를 마쳐 토지 등소유자가 된 자에게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이나 이 혼을 원인으로 토지등의 소유권 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4일까지 「건축법」 제2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주택 법」 제19조에 따라 주택사업계 획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복합지구별로 국 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 는 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 하고 지구 지정 전까지 공동주 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는 제40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현물보상 유효기간) 제27조 의4의 개정규정은 <u>2024년 9월 2</u> <u>0일</u>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제40조의8 및 제40조의 10부터 제40조의17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조(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토지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1 0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 월 29일 다음 날부터 토지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를 마쳐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에게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 속이나 이혼을 원인으로 토지등 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물보상 유효기간)
	<u>2025년 12월 3</u>
<u>1일</u>	
제4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
효7	7]간)
	<u>2025년 12월 31일</u>
<스	├ 제>